

#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
----------	----

제출년월일 : 1999. 6. 29  
제 출 자 : 사 하 구 청 장

## 1. 제안이유

제증명등 수수료중 요율이 현저히 낮은 수수료는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현행과 일치하지 않는 종목들은 신설·변경·삭제함으로써 상기 조례를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등 20여종의 요율을 변경
- 나. 현행법령에 맞게 해당종목 신설·변경·삭제

##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 나. 공연법 제9조, 공연법 부칙 제1조 제2항
- 다. 의료기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 라. 의료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

##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증명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 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b>【증 명】</b>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통	500원	
(2) 인감의 개인신고	1건	400원	일제신고 등은 제외함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통	1,000원	
(2) 약국(휴·폐업)사실 증명	1통	5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통	500원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통	500원	
(3) 징수유예증명	1통	500원	
4. 회계에 관한 증명			
(1) 물품·납품·공사·용역 관련 사실증명	1통	1,000원	
5. 기타 제증명			
(1)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500원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500원	
<b>【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b>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 500원 계속 300원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2. 건설관계			
(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3. 보건사회관계			
(1) 숙박업신고, 명의변경			

## [별지1]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① 호텔업	1건	132,000원	
② 콘도미니엄업	1건	132,000원	
③ 여관업	1건	44,000원	
④ 여인숙업	1건	11,000원	
(2) 목욕장업신고, 명의변경			
① 일반목욕장업	1건	13,200원	
② 특수목욕장업	1건	90,000원	
(3) 이·미용업신고, 명의변경	1건	13,200원	
(4) 유기장업허가, 명의변경			
① 컴퓨터게임장업	1건	45,000원	
② 종합유원시설업	1건	90,000원	
③ 기타 유기장업	1건	45,000원	
(5) 위생관리 용역업신고, 명의변경	1건	6,600원	
(6) 세탁업신고, 명의변경	1건	6,600원	
(7) 위생처리업신고, 명의변경	1건	6,600원	
(8) 세척제 제조업신고, 명의변경	1건	22,000원	
(9)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신고, 명의변경	1건	6,600원	
(10) 장난감 제조업신고, 명의변경	1건	6,600원	
(11) 이·미용사 신규면허	1건	2,500원	
(12) 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	1건	2,200원	
(13) 공중위생업소 변경허가, 신고	1건	(1)~(10) 해당수수료 의 50%	
(14) 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증재교부	1건	500원	
4. 의료관계			
(1) 의료기관개설허가			
① 종합병원	1건	50,000원	
② 병원	1건	30,000원	
(2)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20,000원	
(4)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2,000원	
(6)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2,000원	
(7)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원	
(8)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5. 개인정보인쇄, 열람, 정정신청			
(1) 개인정보 인쇄	1매	300원	
(2) 개인정보 열람	1건	200원	
(3) 개인정보 정정신고	1건	300원	정정사유가 보 유기관에 있는 경우 면제(공공 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6. 문화공보관계			
(1)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0원	
(4) 공연장업등록	1건	10,000원	
(5) 공연장업등록 변경신청	1건	10,000원	
(6) 공연장업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	
(7)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8) 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15건	10,000원	
7. 입찰참가신청(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포함)	1건	10,000원	
8.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1건	600원	
9. 기타			
(1)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요율은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과 인허가, 입찰참가신청, 기타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의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 증명(이하 “제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제 증명등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별표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증명 등 수수료				제 증명 등 수수료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b>【증명】</b>				<b>【증명】</b>			
1. 인감에 관한 증명				1. . . . .			
(1) 인감증명	1통	300원	일제신고등 은 제외함	(1) . . . . .	..	500원	.....
(2) 인감의 개인신고	1건	200원		(2) . . . . .	..	400원	.....
2. 병적에 관한 증명				<삭제>			
(1) 병적증명	1통	200원		<삭제>			
3. 신상에 관한 증명				<삭제>			
(1) 신원	1통	200원		<삭제>			
(2) 부양사실증명	1통	300원		<삭제>			
4.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삭제>			
(1) 영업주	1통	500원		<삭제>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삭제>			
(3) 광업,공업,상업	1통	500원		<삭제>			
(4) 농가,비농가	1통	200원		<삭제>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2. . . . .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			
(2) 생산실적	1통	300원		<삭제>			
(3) 수출실적	1통	300원		<삭제>			
(4) 납품실적	1통	300원		<삭제>			
(5) 건물사용	1통	300원		<삭제>			
(6) 공장원료수요	1통	300원		<삭제>			
(7) 분배농지상환완료	1통	300원		<삭제>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300원		<삭제>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9) 공장등록증명	1통	300원		(1) . . . . .	..	1,000원	
(10)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삭제>			
(11)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500원		(2) . . . . .	..	....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 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삭제>			
(1) 공부의 등·초본				<삭제>			
교부				<삭제>			
· 대장, 문서	1통	300원		<삭제>			
· 토지도면	1통	300원		<삭제>			
· 건물도면	1통	300원		<삭제>			
(2) 공부열람				<삭제>			
· 기본료	1시간	100원		<삭제>			
· 초과료	10분당	100원		<삭제>			
(3) 인·허가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삭제>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삭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및 열람				<삭제>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도시계획도 첨분	<삭제>			
· 우리구가 아닌 시·군 또는 구인 경우의 증명	1필지	2,000원		<삭제>			
②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1건	100원		<삭제>			
· 우리구가 아닌 시·군 또는 구인 경우의 증명	1건	200원		<삭제>			
(2) 환지에정지 분할	1필지	300원		<삭제>			
(3) 환지에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300원		<삭제>			
(4) 환지에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00원		<삭제>			
(5) 채비지 분할신청	1필지	300원		<삭제>			
(6)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300원		<삭제>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7)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	1필지	300원		<삭제>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3. . . . .			
(1) 세목별 납세증명	1통	300원		<삭제>			
(2)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통	300원		(1) . . . . .	..	500원	
(3) 세목별 과세증명	1통	300원		. . . . .			
(4) 정수유예증명	1통	300원		(2)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	500원	
9. 회계에 관한 증명				(3) . . . . .	..	500원	
(1) 거래액(물품공급 실적)증명	1통	300원		4. 회계에 관한 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300원		<삭제>			
(3)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300원		<삭제>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300원		<삭제>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300원		<삭제>			
(6)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삭제>			
(7)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원		<삭제>			
<신설>				(1) 물품·납품·공사·용역관련 사실증명	1통	1,000원	
10. 주택에 관한 증명				<삭제>			
(1) 철거사실증명	1통	300원		<삭제>			
11. 기타 제증명				5. . . . .			
(1) 건축물관리 대장 등본				<삭제>			
① 건축물대장등본	1면	100원		<삭제>			
② 건축물대장초본	1면	100원		<삭제>			
③ 건축물현황도	1면	100원		<삭제>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④ 건축물대장열람	1건	200원		<삭제>			
(2) 모사전송기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매	100원		<삭제>			
(3)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1) . . . . .	..	500원	
(4)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	1건	300원		<삭제>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300원		(2) . . . . .	...	5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 . . .			
(1) 행정서사업 허가 신청	1건	1,000원		<삭제>			
(2) 행정서사업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삭제>			
(3)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신규500원 계속300원		(1) . . . . .	..	.....	
(4) 토지등급설정 심사 청구신청	1건	500원		<삭제>			
(5)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2) . . . . .	..	.....	
2. 산림관계				<삭제>			
(1)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삭제>			
3. 농수산관계				<삭제>			
(1)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삭제>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삭제>			
(1)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	1건	500원		<삭제>			
5. 건설관계				2. . . . .			
(1)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원		<삭제>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삭제>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	척당	500원		<삭제>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900원		<삭제>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이하의 배	척당	1,300원		<삭제>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삭제>			
(3) 통행료(도선료)의 장수허가신청	1건	1,000원		<삭제>			
(4)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삭제>			
(5)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원		<삭제>			
(6) 체비지 확인서(배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 권변경)	1건	500원		<삭제>			
(7) 체비지 소유자 확인 원	1건	500원		<삭제>			
(8) (생략)				(1) (현행과 같음)			
6. 보건사회관계				3. . . . .			
(1) 약국 재개업신고	1건	1,000원		<삭제>			
(2)~(15) (생략)				(1)~(1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신설>				4. 의료관계			
<신설>				(1) 의료기관개설허가			
<신설>				① 종합병원	1건	50,000원	
<신설>				② 병원	1건	30,000원	
<신설>				(2) 의료기관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	1건	10,000원	
<신설>				(3) 의료기관(의원,치과 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신고	1건	20,000원	
<신설>				(4) 의료기관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원	
<신설>				(5) 치과기공소인정신청	1건	2,000원	
<신설>				(6) 치과기공소양도양수 신고	1건	2,000원	
<신설>				(7) 안경업소개설등록	1건	10,000원	
<신설>				(8) 안경업소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7. 개인정보인쇄, 열람, 정정신청				5. . . . . .			
(1) 개인정보 인쇄	1매	200원		(1) . . . . .	..	300원	
(2) 개인정보 열람	1건	100원		(2) . . . . .	..	200원	
(3) 개인정보 정정신고	건	200원	정정사유가 보유기관에 있는 경우 면제(공공 기관의 개 인정보보호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21조제2항)	(3) . . . . .	1건	300원	.... .... .... .... .... .... ....
8. 문화공보관계				6. . . . . .			
(1)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 등록신청	1건	1,000원		(1) . . . . .	..	10,000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2)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2) . . . . .	..	10,000원	
(3) 음반·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3) . . . . .	..	3,000원	
(4) 공연자 등록신청	1건	2,000원		<삭제>			
(5)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1건	2,000원		<삭제>			
(6)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0,000원		(4) 공연장업등록	..	.....	
(7) 공연장 설치허가 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5,000원		(5) 공연장업 등록변경 신청	..	10,000원	
(8)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300원		(6) 공연장업등록증 재교부신청	..	3,000원	
(9) 출판사·인쇄소 등록 신청	1건	500원		(7) . . . . .	..	10,000원	
(10) 출판사·인쇄소 등록 사항 변경등록신청	15건	300원		(8) . . . . .	...	10,000원	
9.~11. (생략)				7.~9.(현행과 같음)			

## 사하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p>	<p>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소속공무원</p>	<p>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소속직원</p>
<p>제26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 항공기가 과세 항공기로 된 때 5. 과세 항공기가 비과세 항공기로 된 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26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 항공기가 과세 항공기로 된 때 5. 과세 항공기가 비과세 항공기로 된 때</p>